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930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장애인 재활을 위한 의료재활, 직업훈련, 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애발생의 예방 및 계몽, 조사연구, 문화, 여가, 스포츠 자원동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7. 7. 2.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6. 12. 26. [redacted]주식회사로부터 [redacted]구 B과 [redacted]구 C 양 지상 주택 및 [redacted]구 D 지상 주택(2015. 6.경 멸실)을 증여받고, 1996. 12.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2동의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의 전 이사장 E(2005. 6. 22. 이사장에서 해임되었다)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이 사회복지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 주택1기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재산세 부과처분 전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이사장의 관사 및 서울 분사무소 등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 그런데 원고의 전 이사장 E는 이사장 직에서 해임된 이후 신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다툰 소가 2013년경 패소로 확정될 때까지 이사장 해임의 효력을 다투며 원고와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동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였다. 원고는 별소로 E에 대하여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E의 집행방해, 집행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계속하여 목적사업에 제공하였음에도, E의 위와 같은 방해행위로 이 사건 주택이 예정된 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이 사건 주택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사회복지법인등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등이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사회복지법인등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구성원이 사회복지법인등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2. 26. '재활연구소, 조기특수교육상담실, 사무소, 일부 사택'으로 사용하겠다면서 등기부상 용도가 '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사실(갑 제2, 8호증), E는 1999. 5. 28. 원고의 이사장에 취임하여 2005. 6. 22. 해임되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2003. 8. 11.부터 2007. 3. 27.까지 이 사건 주택에 원고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등기된 사실(갑 제1호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인도집행을 시도하던 2013. 8. 19.부터 2015. 5. 12.까지, 이 사건 주택 1층에는 E가 거동을 하지 못한채 간병을 받으며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 2층에는 E의 아들 F, 며느리 G이 점유 사용하였던 사실(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현장 확인하였던 2015. 5. 28.경 이 사건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E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제1호증), E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소송에서 'E는 원래부터 거주해 오던 이 사건 건물에 앞으로도 평생 거주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갑 제6호증의 3)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부터 E가 종전의 현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와 그 아들인 F이 원고에게 큰 손실을 가하고 보조금 등을 횡령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해임명령을 받고 원고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받은 사실(갑 제5호증) 등 E가 원고를 운영한 방식에 비추어 보면 E가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을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E가 종전대로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직무 수행의 성격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적이 없다고 보는 이상, 당초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제공된 것을 전제로 E의 방해행위라는 사후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예정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호제훈

판사 이민구

판사 이정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별지

과세처분 목록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redacted]구 B"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 2015. 7. 10.에 부과한 2015년 귀속 주택1기분 재산세 4,149,000원, 도시지역분 1,562,400원, 지역자원시설세 4,540원, 지방교육세 829,800원의 부과처분

나. 2015. 8. 10.에 부과한,

1) 201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6,114,000원, 도시지역분 2,360,400원, 지역자원시설세 13,510원, 지방교육세 1,222,800원의 부과처분

2) 2012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6,690,000원, 도시지역분 2,562,000원, 지역자원시설세 11,630원, 지방교육세 1,338,000원의 부과처분

3) 2013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7,410,000원, 도시지역분 2,814,000원, 지역자원시설세 9,660원, 지방교육세 1,482,000원의 부과처분

4) 2014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7,986,000원, 도시지역분 3,015,600원, 지역자원시설세 8,620원, 지방교육세 1,597,200원의 부과처분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redacted]구 D"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 2015. 7. 10.에 부과한 2015년 귀속 주택1기분 재산세 67,410원, 도시지역분 77,610원, 지방교육세 13,480원의 부과처분

나. 2015. 8. 10.에 부과한,

1) 201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90,600원, 도시지역분 112,560원, 지방교육세 18,120원의 부과처분

2) 2012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95,130원, 도시지역분 118,180, 지방교육세 19,020원의 부과처분[1)]

3) 2013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105,520원, 도시지역분 127,890원, 지방교육세 21,100원의 부과처분

4) 2014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120,640원, 도시지역분 142,000원, 지방교육세 24,120원의 부과처분. 끝.

1) 원고가 소장에서 2.나.2)항에 기재한 '주택분 재산세 6,690,000원, 도시지역분 2,562,000원, 지역자원시설세 11,630원, 지방교육세 1,338,000원'은 위 1.나.2)항의 세액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괄호 생략)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